

뉴저지 실버선교회 정관

Silver Missions Fellowship

Version 2.1.2

Dec. 3, 2023

Silver Moto

“모든 족속을 예수께”

“내 생명 다 하기까지”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

Contact: 201-960-5539

E-Mail: Silvermissionnj@gmail.com

Revision History

버전 및 날짜	개정된 내용	책임자
Ver 1.9.2 11/30/2020	운영이사사회체제로부터 (임원회와 이사회)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따른 제반 개선점들.	정동화, 인대진, 구완중, 이흥기, 주찬연
Ver 1.9.3 12/2/2020	인사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선안과 11/30/20 에 열린 운영이사사회에서 검토한 수정사항을 넣었음.	이문홍
Ver 1.9.4 12/7/2020	12/7/20 에 열린 운영이사사회에서 검토한 결과 이사 자격과 선출에 관한 조항이 필요함에 따라 제 20 조 (이사 자격과 선출) 넣었음. 또 새로 제 21 조 3 항을 넣었음.	이문홍
Ver 1.9.5 12/8/2020	Ver 1.9.4 에서 제 20 조의 항목들을 제 19 조에 삽입했음.	이문홍
Ver 1.9.6 1/17/2021	1. 4 장 14 조 4 항(동창 및 회원관리 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총회에 둔다.)를 삭제함. 2. 제 21 조 5 항에서 "임원회 대표와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참석 할 수 있다" 를 "임원회 대표와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로 개정했음. 3. 9 장 31 조를 수정함.	이문홍, 인대진
Ver 2.0 1/26/2021	2021 년 1 월 26 일 저녁 7:00 시에 열린 뉴저지 실버선교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Ver 2.0 으로 칭함.	이문홍
Ver 2.0.1 11/20/21	임원회 명단에서 빠진 부서를 넣었음. 10 조 1 항을 수정했음. 30 조를 수정했음.	이문홍
Ver 2.0.2 11/20/21	다수 수정한 부분을 붉은색 폰트를 표시했음.	이문홍
Ver 2.1 2/28/22	10 조 1 항의 2) 문구 수정, 10 조 3 의 3), 4 의 2), 6 의 4) 자구 수정, 9 장 동창회를 총동창회로 수정	박재진
Ver 2.1.1 2/28/23	9 조 2, 19 조 4,6, 20 조 1,2,3, 21 조 2 의 이사회장, 부이사회장을 이사장, 부이사장으로 수정	인대진
Ver 2.1.2 12/3/23	9 조 1, 부대표 신설, 선교본부장 삭제, 10 조 1 의 3) 삭제, 10 조 2 신설, 10 조 3 수정, 11 조 2 신설, 13 조 2 수정	정동화, 인대진

뉴저지 실버선교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뉴저지 실버선교회(SMF-Silver Missions Fellowship, Inc.)”라 칭한다.

이하 “본 선교회” 또는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미국 뉴저지주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초교파로 구성된 복음주의적 선교기관으로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하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모집하여 훈련하며, 선교사로 세워 해외 및 국내 선교지에 파송 또는 협력 선교사로서 사역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복음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 운동
2. 선교사 선발, 파송 및 지원
3. 선교사 후보자 교육 및 훈련
4. 선교회 재정 모금 및 관리
5. 선교회에 관한 문서, 영상 등의 제작 및 배포
6. 선교지 및 선교기관과의 네트워크 조성(플랫폼) 및 지원
7. 국내/외 교회와 선교 단체에 관련된 제반 협력사업
8. 창의적 접근 지역을 위한 전략적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1.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뉴저지 실버선교회 부설 선교훈련원의 제반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2. 본 선교 사업에 참여하는 교회 및 후원 기관.

제 6 조 (권리)

1.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 7 조 (의무)

1. 회칙을 준수하며 선교사역을 위한 기도, 회비 납부, 본 회의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2.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세계 복음화에 적극 동참한다.

제 8 조 (탈퇴, 제명)

1. 임의 탈퇴: 본인의 서명으로 사임서를 본 회의 대표에게 제출한자.
2. 징계에 의한 제명: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 회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회비 납부 등)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출석인원 2/3 의 찬성을 얻으면 면직,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제 9 조** 본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도록 한다.

1. 임원회
대표 1 인
부대표 1 인
사무총장 1 인
선교훈련원장 1 인
중보기도회장 1 인
재정부장 1 인
감사 2 인
사역에 따른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2. 이사회
이사장
부이사장
서기
정책에 따른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기타 조직
총동창회
자문위원회

제 10 조 (임원의 직무)

1. 대표

- 1) 대표는 본회의 대표로서,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대표는 이사회 결의 사항을 집행하며, 임원회의 임원들을 선임하고, 지휘 감독한다.

2. 부대표

- 1)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와 함께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 2) 대표 유고 시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차기 대표를 승계할 경우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사무총장

- 1) 본회의 사무행정과 임원회의 모든 사역을 총괄한다.
- 2) 본회와 해외 선교센터 및 선교사간의 유기적 연결과 모든 선교사업 추진에 협력한다.
- 3) 각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회의 협의 사항 전달 및 실행을 주관한다.
- 4) 임원회의 결과 및 제반 실행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중보기도회장

- 1)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정기적으로 주관한다.
- 2) 기도회 관련 세부사항(제목, 진행, 참여인원 등), 재정 등의 사역보고서를 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5. 재정부장: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보고한다.

6. 선교훈련원장

- 1) 본회 부설 선교훈련원을 총괄적으로 운영한다.
- 2) 훈련 일정, 훈련 장소 그리고 강사진 구성 및 커리큘럼을 담당한다.
- 3) 선교위원회와 협의하여 훈련원생의 단기선교 및 현지체험훈련계획을 수립한다.
- 4) 훈련과 관련된 재정 계획, 시행, 결과 및 평가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6. 감사

- 1) 본회의 재산 및 재정에 대한 사항을 감사한다.
- 2)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단,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2. 대표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되, 1 번 중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선출 및 인준)

1.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임원회의 임원은 대표가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제 13 조 (임원의 궐위)

1. 본회 임원 중 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가 궐위된 임원을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 대표의 유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잔여임기 및 직무를 부대표가 대행한다

제 4 장 총 회**제 14 조 (총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정기총회: 1년 1회 소집하고, 총회 소집통보는 총회일자 4주 전에 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 이사회의 요구 혹은 본회 회원의 ¼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대표가 소집하고 소집통보는 2주전에 하여야 한다.
3. 총회는 다음의 안건을 의제로 한다.

이사의 인준

이사회가 추천한 대표, 이사회장 선출

정관 개정 및 인준

본회의 재산의 처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타 재산상의 문제처리

기타 주요한 사업계획 및 업무보고

제 15 조 (성원 및 의결 정족수): 20 명이상을 성원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제 5 장 임 원 회****제 16 조 (구성):** 임원회는 본회의 실질적 운영을 관장하는 기구로서 제 9 조에 명시된 임원으로 구성한다.**제 17 조 (회의):** 임원회는 대표가 정기 또는 임시로 발의하여 소집한다. 표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제 18 조 (직무):**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운영의 총괄

2. 중요사역의 계획 및 실행여부를 심의
3. 선교사 임명 및 파송 심의
4. 기타 중요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제 19 조 (이사 자격, 구성 및 선출, 탈퇴)

1. 이사 자격: 기독교 복음을 믿고 따르며, 본선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심이 있으며, 그리고 뉴저지 실버선교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 이사 구성: 이사회는 최소 7인 이상으로 하며, 실버회원이 아닌 분도 이사로 초청할 수 있으며, 실버회원외 이사는 전체 이사 숫자의 1/5을 넘지 않는다.
3. 이사 선출:
 - 1) 이사의 임기가 끝나기 전, 이사회에서는 인선위원회(가칭)를 선임하여 다음 이사 추천을 위임한다.
 - 2) 본 선교훈련원 수료 중에 선출된 동기회장은 본인이 허락하면 이사로 추천된다.
 - 3) 현 이사 중 2분 이상 추천을 받으면 이사회결정으로 이사가 될 수 있다.
4. 모든 이사들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고, 총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한다.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5.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6. 이사직을 탈퇴를 원할 때는 이사장에게 서면제출후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 20 조 (이사회 구성)

1. 회장단: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서기 1인.
2. 회장단의 임기: 이사장, 부이사장, 서기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3. 회장단의 직무
(이사장)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이사회 업무를 관장한다.
(부이사장) 이사회장 유고 시 권한을 대행한다.
(서기) 이사회회의 회의록을 기록 정리한다.

제 21 조 (이사 회의)

1. 정기 이사회는 년 2 회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1/3 이상의 이사 동의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3. 회의 구성은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4. 비대면 회의 소집도 가능하며, 의결된 사항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임원회 대표와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참석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6. 안건 토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해당부서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22 조 (의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심의 및 예산, 결산의 승인
2. 총회에 상정할 안건 인준
3. 인사에 관한 사항
4. 재정에 관한 사항
5. 인건비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관한 사항
7. 각 위원회의 업무 및 실행 매뉴얼 승인
8.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한 사항

제 23 조 회원간 또는 사역부서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수습을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7 장 위 원 회

제 24 조 (위원회 구성 및 직무)

1. 위원회는 이사회 이사들로 구성한다. 각 이사는 최소 한 분야의 위원회에 속해야 한다.
2. 각 위원회는 위원장 1 인, 간사 1 인을 두며, 위원은 각 분야의 사역을 연구, 개발하며 임원회 임원을 보조, 협력한다.
3. 직무
 - 1) 위원장
 - (1) 위원장은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 (2)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조직과 주어진 모든 사업을 지휘, 추진, 감독한다.
 - (3) 임기는 3 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신임만으로 연임할 수 있다.
 - (4) 총회에 정기적인 보고와 함께 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
 - 2) 간사: 위원장은 간사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8 장 재 정

제 25 조 (수입): 본 회의 재정 수입은 회원의 회비와 이사회비, 및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단, 회비 및 이사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6 조 (지출): 모든 지출은 본 회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지출시에는 소정의 지출결의서를 제출하고, 대표의 최종 승인에 따라 지출하되 전결규정에 따른다.

제 27 조 (회계구분): 본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 회원의 년 회비 및 이사회비
2. 특별회계: 목적헌금, 선교후원헌금 및 특별헌금

제 28 조 (회계년도): 매년 1 월 1 일부터 당해 년도 12 월 31 일로 한다.

제 29 조 (회계감사): 정기 회계감사는 년 1 회 실시하고, 이사회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9 장 총 동 창 회

제 30 조 (조직): 본회는 선교훈련원을 수료한 훈련생으로 동창회를 조직하여, 회원간의 교류, 협력을 도모하고 경조사를 관리한다.

1. 총동창회장과 부회장 2 인
2. 총무 및 서기 각 1 인, 회계 2 인(정, 부)

제 31 조 총동창회장과 부회장은 동기회장 모임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 년으로 하며, 이사회가 인준한다.

1. 총무와 서기, 회계도 임기는 3 년으로 하고, 총동창회장이 임명한다.
2. 필요에 따라 '회원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0 장 자문위원회

제 32 조 (조직): 본회는 세계 선교 업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자문위원은 증경 임원 및 이사 중에서 대표가 위촉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한 5 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11 장 부 칙

제 33 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34 조 본 정관의 수정 및 개정은 이사의 1/3 의 제안 또는 임원회의 제의로,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 끝 =====